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3
----------	-----

2023. 6. 13.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료 감면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하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 6. 28.)에 따른 “만” 표기를 삭제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을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으로 변경하여, 다자녀 감면기준을 완화함.

(안 별지 3 제11호)

나. “만 65세 이상”을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변경함.

(안 별지 3 제12호)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21. ~ 2023. 5. 11.)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문성 )

##### 1 조례안의 개요

- 저출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자녀 혜택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다둥이행복카드 혜택 대상 범위 확대방안’을 반영하고 「행정기본법」 제17조 및 「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 계산을 만(滿)나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 주요 사항 검토

가. 다둥이행복카드 혜택 대상 범위 확대 (별표 3 제11호)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 10. (생략) 11. 다둥이 행복카드 <u>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u> <u>을 둔</u> 가족	[별표 3]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 10. (현행과 같음) 11. 다둥이 행복카드를 <u>소지한</u> 가족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와 제4호 및 제5조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다자녀가족’으로 정의하고, 이들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음.
- 우리 조례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시의 집행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해서도 양육 경감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세에도 맞지 않는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고 보임.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정책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는 바, 별표3의 제11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sup>1)</sup>

<표-1> 다둥이 카드 관련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li> <li>3. (생략)</li> <li>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다만, 막내가 13세 이하)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li> <li>5. ~ 8. (생략)</li> </ol> <p>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①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ol>
---

1) 2023년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그쳤고, 서울의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 4. 다자녀 가족 우대를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사업
- 5. ~ 7. (생략)
- ② ~ ③ (생략)

나. 나이 계산 변경 (별표 3 제12호)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 11. (생략) 12. 어르신(만 65세 이상)	[별표 3]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 10. (현행과 같음) 12. 어르신(65세 이상)

-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만(滿)나리로 계산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었음.(2022년 12월)

<표-2>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나리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나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年齡)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출생일부터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태어난 날짜와는 무관하게 1살씩 증가시키는 계산 방법인 “세는 나이”를 일반적으로 사용함.
- 이와 달리 연령을 계산하는 다른 방식으로는 “만 나이”가 있는데, 생일을 기준으로 0세에서 시작하여 1년(365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식적인 연령 계산 및 표시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방식임.

- 또 다른 방식으로는,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경우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나이로 취급하는 “연 나이”가 있음.
- 나이 계산의 한 예로 1995년 9월 10일생은 2022년 9월 8일 기준으로 세는 나이로는 28세, 만 나이로는 26세, 연 나이로는 27세가 되는데,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방식과 공식적인 법률관계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각각 달라 혼란이 종종 발생한 바 있음.

(표) 나이 계산의 예시(1995.9.10.생)

연도		2022년		2023년	
기준일		2022년9월10일 이전	2022년9월10일 이후	2023년9월10일 이전	2023년9월10일 이후
연령 (세)	세는 나이	28	28	29	29
	만나이	26	27	27	28
	연나이	27	27	28	28

- 위와 같은 사유로 「행정기본법」이 만(滿)나리로 연령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통일된 바,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
----------	-----

제출년월일 : 2023. 6.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 1. 제안이유

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강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료 감면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하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 6. 28.)에 따른 “만” 표기를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을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으로 변경하여, 다자녀 감면기준을 완화함.

(안 별지 3 제11호)

나. “만 65세 이상”을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변경함  
(안 별지 3 제12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4. 21. ~ 2023. 5. 11.)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용료의 감면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시설	감면율	대 상	비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전액 감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li> <li>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li> <li>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li> <li>11.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li> <li>12. 어르신(65세 이상)</li> <li>13.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영유아 10명당 1인)</li> <li>14. 구청장이 놀이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ol>	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50% 감면	20명 이상 단체	

## 신 · 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3] <u>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u></p> <p>(생략)</p> <p>11. 다둥이 행복카드 <u>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u></p> <p>12. 어르신(<u>만</u> 65세 이상)</p>	<p>[별표 3] <u>이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u></p> <p>(생략)</p> <p>11. 다둥이 행복카드를 <u>소지한 가족</u></p> <p>12. 어르신(65세 이상)</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 4. 작성자

- 보육지원과 행정7급 이주현(02-3423-5853)